



1. 사업대상자

- (품질검사) 시·도, 시·군 및 품질검사 기관
- (품질등급제 사업) 전국 시·군에서 사일리지(헤일리지, 건초 포함)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, 농업경영체,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·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자가소비용으로 사일리지(건초, 헤일리지 포함)을 제조하는 자는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단, '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'의 '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' 지원조건을 충족한 사업대상자는 지원 가능

2. 지원대상 및 요건

- (품질검사) 동·하계 사료작물의 보관 형태별, 초종별 품질등급 구분을 위한 품질검사
- (품질등급제 사업)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(건초 포함) 제조비 지원
 - *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경영체에서 생산한 물량 중 정부의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을 받는 물량, TMR업체, 유통센터, 축산농가 공급물량은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가능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(품질검사) 품질검사장비, 검사비용
 - * 단, 예산 범위 내에서 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균 검사 등 안전성 검사장비도 지원 가능
- (품질등급제 사업)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, 망사(net), 발효제, 연료, 단거리 운반비용, 인건비, 보온덮개,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등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지원

4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(품질검사) 국비보조 50%, 지방비 50%
- (품질등급제 사업) 일반단지: 국비보조 30%, 지방비 60%, 자부담 10%
전문단지: 국비보조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
 - *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단가 적용

〈 동계 사료작물 〉

- 수분 · 조단백질 유통규격 준수

구분 (%, 원/kg)	품질등급			
	건초 등급	A등급	B등급	등외 등급
수분	20% 미만	2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60% 미만	60% 이상 또는 9% 미만
조단백	9% 이상			
지원액	200	180	160	120

* 조단백질은 허용오차 적용(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10%)

〈 하계 사료작물 〉

-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재배 유도

구분	A그룹(저수분)			B그룹(규격화)				기타
	사료피, 알팔파, 수수류			옥수수		사료용 벼		
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A등급	B등급	A등급	B등급	그외 초종 또는 등외
수분(%)	20 이하	20 초과 ~ 40 이하	40 초과 ~ 60 이하	68 이하	68 초과 ~ 75 이하	58 이하	58 초과 ~ 65 이하	
지원액 (원/kg)	230	200	170	230	200	230	200	140

* 곤포(압력) 130bar 이상 작업 조치 /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(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%)

*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(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%)

-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‘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’ 참고